장기상해 무배당
뉴팔순그린보험 보통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이하 “약관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①보험종목
②보험기간
③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④보험가입금액
⑤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⑥기타 계약의 내용

②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한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사망보험금 또는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①제1항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②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③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보험료의 납입)
①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를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10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37조(약관대출)에 의한 약관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이자(약관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 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 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 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의 부활에 관하여는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3조(계약연령의 계산)

①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의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연령에 의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만 연령으로 계산됩니다.

제 3 관 보험금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 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 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피보험자의 고의

②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계약자의 고의

④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

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⑥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⑦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⑧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⑨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⑩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⑪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⑫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⑬위 제12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2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3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②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6조(사망보험금)

1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1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2](후유장해 지급률표)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2](후유장해 지급률표)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 [별표2](후유장해 지급률표)의 각호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4[별표2](후유장해 지급률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2](후유장해 지급률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2](후유장해 지급률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표2](후유장해 지급률표)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18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해약환급금)
①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3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

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제3항과 같습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③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④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제1항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제1항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7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8조(주소변경통지)

①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0조(대표자의 지정)

①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1조(손해의 통지)

①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청구서(회사양식)
②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③보험증권
④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⑤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3조(보험금의 지급)

①회사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34조(환급금의 지급)

①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회사는 해약환급금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5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②일정기간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③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④일정기간 이자만 지급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6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①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③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제37조(약관대출)

①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①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3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장기상해 무배당
뉴팔순그린보험 특별약관

1. 고도후유장해연금담보 특별약관
(일반상해 50%초과 후유장해)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장기상해 무배당 뉴팔순그린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하며, 사망은 제외합니다.)되어 【별표2(후유장해 지급률표)】의 지급률이 50%를 초과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아래에서 정한 금액(기준금액에 【별표2(후유장해 지급률표)】의 각호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고도후유장해연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지급명칭	지 급 액
고도후유장해연금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의 5%씩 120개월간 지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고도후유장해연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별표2(후유장해 지급률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2(후유장해 지급률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2(후유장해 지급률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2항 및 3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2(후유장해 지급률표)】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⑤제1항의 고도후유장해연금은 수익자가 원하는 경우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소멸하더라도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고도후유장해연금의 미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속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입원급여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계약의 부활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을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및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을 다시 적용하고,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제2항의 책임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①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장기상해 무배당 뉴팔순그린보험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입원일수 120일을 한도로 3일초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입원급여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④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동안에 다수의 질병 또는 상해를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보상액은 제1항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
다.
⑤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사항 (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의 제5호, 제6호 및 제7호는 아래 제2호, 제3호로 대체합니다.)

②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애

③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성병

⑤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⑥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회사는 제1항의 손해 외에 아래의 손해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②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③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④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보험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제1조 (계약의 무효)

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장기상해 무배당 뉴팔순그린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의 제4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계약체결시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2조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회사가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계약의 부활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을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및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을 다시 적용하고, 이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제2항의 책임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4조 (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의 제5호에도 불구하고 책임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사망하거나 제3항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제1항의 경우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적용하며,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며,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③장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②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③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④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⑤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⑥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⑦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⑧한 팔을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⑨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만, 위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날 현재의 장해 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하고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5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3대질병진단급여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 (계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2조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3대질병 진단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상피내암진단급여금만

지급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장기상해 무배당 뉴팔순그린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을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하여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및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을 다시 적용하고, 이 특별약관의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의 책임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4조 (보상하는 손해)

①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보통약관의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의 제5호에도 불구하고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3대질병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3대질병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가입후 2년이내 진단시	가입후 2년초과 진단시
3대질병 진단급여금	보험가입금액의 0.5배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의 1배 해당액
상피내암 진단급여금	보험가입금액의 0.1배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의 0.2배 해당액

단, 피보험자가 위에서 정한 3대질병진단급여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 또다른 3대질병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3대질병/상피내암진단급여금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②위에서 “3대질병“이라 함은 암(상피내암제외), 허혈성심질환 및 뇌혈관질환을 말합니다.
③위 제1항의 경우 책임개시일은 암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하며 허혈성심질환, 뇌혈관질환 및 상피내암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적용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5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별표3(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5(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8조 (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성심질환 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6(허혈성심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9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 3대질병수술급여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 (계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장기상해 무배당 뉴팔순그린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을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하여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및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을 다시 적용하고, 이 특별약관의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의 책임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

①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보통약관의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의 제5호에도 불구하고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3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3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3대질병수술급여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②위에서 “3대질병“이라 함은 암(상피내암제외), 허혈성심질환 및 뇌혈관질환을 말합니다.

③제1항의 경우 책임개시일은 암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하며 허혈성심질환,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적용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4조 (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 (이하 “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3대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 2항에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이 보험에서 “3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3대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3대질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3대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3대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3대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3대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③이 보험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3대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제1항에서 정한 장소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5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별표3(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5(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7조 (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성심질환 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6(허혈성심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8조 (알릴의무위반의 효과)

피보험자가 암진단 확정 후 암진단 확정과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 전 알릴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암으로 인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경우 해지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제9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3대질병요양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 (계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장기상해 무배당 뉴팔순그린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을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하여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및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을 다시 적용하고, 이 특별약관의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의 책임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

①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보통약관의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의 제5호에도 불구하고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3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3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21일, 18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후 생존하여 퇴원하였을 때 아래의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요 양 급 여 금
121일~180일 계속입원후 생존퇴원시	매월 보험가입금액의 5%씩 12회 지급
181일이상 계속입원후 생존퇴원시	매월 보험가입금액의 10%씩 12회 지급

②위에서 "3대질병"이라 함은 암(상피내암제외), 허혈성심질환 및 뇌혈관질환을 말합니다.

③제1항의 경우 책임개시일은 암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하며 허혈성심질환,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적용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④이 보험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3대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하며, 보험기간중에 동일한 3대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3대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⑤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요양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3대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 2항에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이 보험에서 "3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3대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3대질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3대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3대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3대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3대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5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별표3(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5(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7조 (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성심질환 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6(허혈성심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8조 (알릴의무위반의 효과)
피보험자가 암진단 확정 후 암진단 확정과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 전 알릴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암으로 인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경우 해지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제9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 장기간병비용담보 특별약관

제1조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회사가 장기간병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①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기간중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상태”로 진단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매월 보험가입금액의 10%해당액을 장기간병비용으로 24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상태"로 진단확정된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더라도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상태"로 진단확정된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제1항에 의한 장기간병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제1항의 장기간병비용은 수익자가 원하는 경우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드리지 아니합니다.

①피보험자의 고의
②수익자의 고의
③계약자의 고의
④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함)
⑤알코올중독, 습관성 의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⑥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상해
⑦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⑧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⑨전쟁, 외국의 무력행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⑩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함, 이하 같음)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⑪제11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제4조 (활동불능 및 인식불명의 정의)

1이 특별약관에서 "활동불능상태"라 함은 종일 누워 있으면서 아래 제1호를 포함하고 제2호의 ㈎ 내지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①보행에 있어 보조기구(의수, 의족, 휠체어 등)를 사용하여도【별표8(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의 제1항에 규정한 어느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②다음의 어느 행위에 있어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별표8(일상생활동작장해분류표)】의 제2항에서 제5항까지에 규정한 어느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식사
㈏ 배설
㈐ 목욕
㈑ 의복의 착탈

2이 특별약관에서 “인식불명상태”라 함은 【별표10(기질성치매분류표)】에 정한 기질성치매로 진단확정되고 또한 기질성치매에 의하여 다음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①다음의 어느 행위에 있어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별표8(일상생활동작장해분류표)】의 각항에 규정한 어느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 보행
㈏ 식사
㈐ 배설
㈑ 목욕
㈒ 의복의 착탈
②【별표9(문제행동분류표)】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일상생활을 일탈한 문제행위중 어느 하나의 행위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문제행위가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3제2항에서 기질성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발달된 지적기능이 뇌내에 후천적으로 발생한 기질적인 병 또는 손상에 의해 전반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저하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5조 (활동불능 및 인식불명의 진단확정)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상태”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사 자격을 가진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6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1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청구서 (회사양식)
②사고증명서(“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상태”가 180일 이상 계속되었음을 확인한 진단서)
③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⑵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의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7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8. 일반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⑴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장기상해 무배당 뉴팔순그린보험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⑵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9. 질병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⑴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질병입원의료비 (이하 “의료비”라 합니다.)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 병실을 말합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②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③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⑵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⑶회사는 제1항의 의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80% 해당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민건강보험요율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제1호,제2호,제3호의 의료비는 각각 발생 의료비총액의 30% 해당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여기서 건강보험요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국민건강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④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 질병으로 2회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으로 인한 의료비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아래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 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800만원한도	200만원한도	400만원한도	200만원한도

⑤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 (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4항의 비용(발생의료비를 말합니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사항 (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의 5호,6호 및 7호는 아래 2호,3호로 대체합니다.)
②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③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성병
⑤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회사는 아래의 의료비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③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④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⑥정상분만, 치과질환
⑦병실차액,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⑧(【별표 7】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분류표)에 정한 비뇨기계 장애,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⑨산재보험에서 질병으로 보상받는 의료비. 단, 이 경우에도 본인부담 의료비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⑩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항

제3조 (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 2항에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이 보험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③이 보험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제1항에서 정한 장소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

引),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7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 1】 해약환급금 명세표

【별표 2】 후유장해 지급률표

해당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임.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눈(眼)의 장해	100
1) 두 눈이 멀었을 때	60
2) 한 눈이 멀었을 때	34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26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0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10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 이하)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5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2. 귀(耳)의 장해	80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0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 듣지 못할 때	
4) 한 귀의 청력이 50㎝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할 때	5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5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5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5. 외모(얼굴·머리·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5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20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20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15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10

후유장해의 분류	지급율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 팔의 손목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7)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40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20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20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11)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12)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5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40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때	30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때	10
16) 한 다리가 5㎝이상 짧아진 때	34
17) 한 다리가 3㎝이상 짧아진 때	20
18) 한 다리가 1㎝이상 짧아진 때	7
8. 손가락의 장해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100
2)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2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손가락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때	20
4)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 마다)	8
5)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7)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손가락 마다)	5
9. 발(가락)의 장해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2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발가락 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 마다)	3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100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75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50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25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을 때	10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42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34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6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급율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100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 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75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0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25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10

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율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율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 지급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지급율 : 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 용 어 풀 이 >

1. 귓바퀴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½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⅓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추상장해란 성형 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가. 외모의 뚜렷한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 이상의 조직 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나. 외모의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¼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 이상의 조직 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½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½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½크기 이상의 추상

4.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0 이상의 전만증 또는 200 이상 측만 변형된 경우

2) 중등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0 이상의 전만증 또는 100 이상 측만 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 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 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¼이하로 제한 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 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½이하로 제한된 때

② 두개골과 상위경추(제 1, 2 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¾이하로 제한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5.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¼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 이상의 동요 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½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 이상의 동요 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¾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 이상의 동요관 절이 있는 경우

6. 손·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발가락뼈를 잃은 경우

7.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가락뼈를 잃은 경우

2)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 1, 2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½이하가 되었을 때

8. 흉·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을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½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9.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 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별표 3】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신생물	C43-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 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3-C75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제4차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4】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1.1 시행)중 다음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 기관의 상피내 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기계의 상피내 암종	D02
4. 상피내의 흑색종	D03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D04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D05
7. 자궁경관의 상피내 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D09

제4차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5】 뇌혈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뇌혈관 질환	[대뇌혈관 질환]	
	·거미막하 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 개내 출혈	I62
	·뇌경색(증)	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졸증	I64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 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 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기타 대뇌혈관 질환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뇌혈관 장애	I68
	·대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

제4차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6】 허혈성심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허혈성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허혈성 심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협심증	I20
	·급성 심근경색증	I21
	·속발성 심근경색증	I22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I23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 질환	I24
	·만성 허혈성 심장 질환	I25

제4차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7】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비뇨기계의 기타 장애	N39
2. 치핵	I84
3. 항문 및 직장부의 열구 및 누공	K60
4. 항문 및 직장부의 농양	K61
5. 항문 및 직장의 기타질환	K62

제4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8】 일상생활동작 장해 분류표

1. 보행을 스스로 할 수 없음
 ① 두손두발로 기거나, 무릎 또는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다.
 ② 혼자서는 뒤집지 못하거나 침대위에서 조금 밖에 이동할 수 없다.
 ③ 혼자서는 전혀 이동할 수 없다.

2. 음식물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음
 ① 혼자서는 식사도구를 사용하여 식사할 수 없다.
 ② 혼자서는 전혀 식사할 수 없다. (신체의 장해에 의해 요양 중이어서 입을 통한 영양섭취 및 식사가 불가능하여 혈관 또는 신체에 튜브를 통해 수액제를 삽입하거나 유동식으로 영양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를 포함함)

3. 대소변의 배설후 뒷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음
 ① 혼자서는 배변을 닦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② 혼자서는 배변을 위해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없다.
 ③ 잦은 실금으로 인하여 기저귀 또는 특수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④ 치료를 위한 절대안정으로 침상에서 특수용기를 사용하여 배설행위를 해야 한다.

4. 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음
 ① 혼자서는 몸을 씨거나 닦거나 할 수 없다.
 ② 혼자서는 욕조에 출입을 할 수 없다.
 ③ 혼자서는 전혀 목욕을 할 수 없다.

5. 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음
 ① 혼자서는 옷을 입거나 벗을 수 없다.

【별표 9】 문제행동 분류표

1. 배회하다. 또는 길을 잃는다.
2. 과식, 거식 또는 이식(음식물이 아닌 종류를 섭취)을 한다.
3. 장소에 가리지 않고 배설을 한다. 또는 신체의 배설물을 묻히거나 만지는 등의 불결한 행위를 한다.
4. 폭력행위 또는 파괴행위를 한다.
5. 흥분해서 소동을 피운다.
6.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7. 물건을 훔친다. 또는 마구 물건을 모은다.

【별표 10】 기질성치매분류표

「기질성치매로 진단확정되다」는 것은 다음의 1.과 2.에 모두 해당되는 「기질성치매」임을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해서 진단확정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뇌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2.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1.에 의한 기질성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여기에서 「기질성치매」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코드
1.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2. 혈관성 치매	F01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4. 상세불명의 치매	F03
5. 치매에 병발된 섬망	F05.1

제4차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